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8. 30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7월 24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8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 제1차(97. 8. 27) 내무위원회 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강호영)

가. 제안이유

보건소법이 전문 개정되어 지역보건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규정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함(안 제1조)
-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전부 개정함(안 제3조 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봉환)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규정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

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건강증진 · 보건교육 ·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 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 ·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관장사무) ①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보건소에 대한 계몽, 교육, 선전 등)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출생·사망·질환을 비롯한 보건에 관한 모든 통계) 3. 영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의 영양실태조사 연구 및 개선 등) 4.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시설에 관한 보건교육 및 사업장 종업원의 건강관리 등)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각급 학교학생 및 교사의 보건관리, 환경 위생지도와 보건시설의 향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학교보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 보건소안에 학교측과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의료업에 관한 허가 및 등록, 개설신고 등의 사무관리와 지도단속)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8.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 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보건소 관할에 배치되어 있는 공의의 업무지도)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 약업에 대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등의 사무 처리와 업무에 대한 지도 단속)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임산부의 등록, 유아의 건강관리의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 선전, 지도 등) 13.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마약지도에 관한 사항 (마약법에 의하면 허지도감독 및 마약사범 등의 단속) 15. 기타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②(생략) 	<p>제1조 (목적).....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p> <p>.....</p> <p>.....</p> <p>.....</p> <p>제3조 (관장사무) ①.....</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학점신성의약 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②(현행과 같음)